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8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3.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4.17.) 상정, 심사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6.27.) 상정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위원회(2025.7.2.)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7.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 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절차를 도입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①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증원 및 추천주체 변경·확대

O 이사 선임권한을 방통위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 이사 추천주체의 확대 등은 민주적 정당성, 정치후견주의의 탈피 및 정치적 독립성의 확보 등 여러 가치에 기반한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 정수 증원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 할 필요.

② 사장후보추천위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등

○ 기존에 사장후보추천위 구성방식이나 사장의 임명·선임 절차에 대한 국회 논의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현행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대립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③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결격사유·연임제한

- 이사나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자의적 임명을 방지하고 선임의 전문성·투명성·정당성에 대한 제고가 가능한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사나 임원의 결격사유로 '방문진, KBS, 종편·보도전문PP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은, 공영 방송의 독립성 제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형량을 통해 적정한 범위나 기준을 정할 필요.
- 이사 및 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연임을 지속해 온 이사의 경우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정치적 후견주의를 양산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수 있음.

④ 이사·사장의 신분보장,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

- 이사나 사장 등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직무상 독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해임을 방지하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강화할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재의요구 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이사 및 임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 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금지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벌칙까지 두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⑤ 이사회 회의 비공개사유 축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등

-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 비공개 사유 중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개인에서 공사, 임원 및 이사를 제외하고 있음.
- O 공사, 이사, 임원 등에게 헌법상 인격권 등이 있고 개인과 비교하여 차별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⑥ 벌칙 및 과태료 관련

○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제재수단의 활용가능성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다른 법률 등에서의 유사행위 의 처벌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한민수의원, 이훈기의원, 최민희의원, 황정아의원, 박민규의원, 노종면의원, 조인철의원, 김현의원, 이해민의원, 이정헌의원, 김우영의원, 서영교의원, 신장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o 사실상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현행 구조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이사 추천을 국회, 시민사회, 현직 직원 등으로 다원화해 공영방송이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구조임(김현·이훈기·노종면·한민수위원). 정권에 따라 바뀌는 방송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최민희·한민수위원)
- o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 이상의 국민대표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등으로 특정 세력의 독주를 방지하고자 함(김현·이훈기 위원)

- o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로 경영진과 정치 권의 개입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김현·노종면·이정헌 위원).
- o 노조·시민단체 몫 이사 비중이 과도해 사실상 민주노총이나 언론 노조 등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박정훈·김장겸· 이상휘·최수진 위원).
- o 임직원과 시민사회 등의 이사 추천은 국민이 위임한 기구가 아니므로 대의원칙에 위배됨. 또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강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등으로 방송사의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와 헌법상 방송편성의 자유를 위반할 위험(최형두·김장겸 위원).
- o 정파적 다툼이 방송 이사회로 직접 유입되고 오히려 정치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신성범 위원).
- o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법개정 추진, 충분한 숙의와 협의가 부재 하였음(최형두·이상휘 위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찬성 11, 반대 3)

8. 기타 사항

소위 공청회 개최(2025.5.9.)